Journal of Rhinology 발행규정

2017. 7. 9 제정
2020. 8. 23.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비과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에 학술 교류를 통한 회지의 질적 향상과 더 나아가 학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 (발행인 및 편집인)
1. 학회지 발행인 및 편집인을 둔다.
2. 학회지의 발행인은 회장이, 편집인은 간행이사가 당연직으로 맡는다.

제3조 (학회지 간행위원회)
1. 학회지의 발행을 위해 간행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 학회운영내규에 의한다.

제4조 (발행)
학회지는 년 3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8.23.>

제5조 (발행 일시)
학회지는 3월과 7월과 11월 말일에 발행 및 발송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8.23.>

제6조 (개정 및 폐지)
발행에 관한 이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간행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발행인과 대한비과학회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대한비과학회 회칙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